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회칙

제정 1997년 6월 19일

일부 개정 2012년 7월 7일

일부 개정 2013년 1월 25일

일부 개정 2013년 4월 19일

일부 개정 2014년 10월 18일

##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ventional Cardiology)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중재적 치료 및 연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함에 있다.

제 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강연회 및 집담회 개최 및 후원
2. 공동 학술 연구 사업
3. 중재기술 등록 사업
4. 교육 및 홍보 사업
5. 대한심장학회 위탁사업
6. 외부 위탁 연구 사업
7.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 사업

##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구성) 본 회는 정회원, 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심장 및 혈관질환의 중재적 치료 및 연구에 종사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또는 의학교육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한 개 이상 만족하며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후 이사회

의 인준을 받고 회비를 납부한 자

- 1) 순환기 분과전문의를 취득하였거나 순환기 전임의를 1년 이상 이수하고 의학교육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 2) 타분야 전공자로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2. 회원

심장 및 혈관질환의 중재적 치료 및 연구에 종사하는 의료법 상의 의료인 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의료기사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후 이사회 인준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 자

##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크고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4.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제 6 조 (입회)

1.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초년도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정회원의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0 배액으로 한다.
2. 회비 납부 및 연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 제 7 조 (자격상실 및 재 입회)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케 되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2. 제 1 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자격 상실 후 3년 이내에 재 입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유를 들어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재 입회 할 수 있다.

## 제 8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 3장 임 원

제 9조 (임원)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명
2. 이사장 1 명
3. 평의원 40 명 내외
4. 이사 20 명 내외
  - 가. 상임이사 9 명
  - 나. 비상임이사 11 명 내외
5. 감사 2 명

제 10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은 본 회의 회무를 관리하고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총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4. 상임이사는 이사회와 상임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5.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장을 보좌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및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평의원은 별도 평의원 선출 기준에 의한다.
3.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5. 임원의 임기는 회장은 1년, 이사장, 이사, 감사, 평의원은 2년으로 하

며, 이사장은 중임할 수 없다.

6. 춘계 학술대회일부터 임기를 개시한다.
7. 차기 회장 및 이사장은 임기 종료 6 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8. 임원추천위원회는 전 회장, 전전 회장, 전 이사장, 전 총무이사, 현 회장, 현 이사장, 현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12 조 (고문위원) 본 회는 70 세 이내의 정년 퇴임한 평의원 중에서 20 명 내외의 고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5 년이다. 고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제한이 없고 각종 회비를 면제하며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 4 장 회 의

### 제 13 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 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회칙 개정은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일반 의결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
  - 2)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타

### 제 14 조 (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연 1 회 정기 평의원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 혹은 평의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5 조 (이사회)

1. 이사장은 임원 중에서 이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업무를 위해 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연구, 간행 및 편집, 보험, 인증제 관리, 기획, 정보 및 홍보, 재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둔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이사장은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잠정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
4. 이사가 임기 중 유고시에는 보충할 수 있으며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6 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실무자 회의로서 상임이사가 구성원이 되며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본 회의 모든 회무를 관리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가.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각 위원회의 위원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라. 사무직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마.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및 강연회에 관한 사항
  - 바.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제 17 조 (각종 위원회)

1. 본 회는 학술위원회, 연구위원회, 간행 및 편집위원회, 보험위원회, 인증제 관리위원회, 기획위원회, 정보 및 홍보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각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한다.
3. 각 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장이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위원

장의 임기에 준한다.

4.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단 혹은 등록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 18 조 (연구회 및 지회)

1. 심장 및 혈관질환의 중재시술 분야와 발전과 특정 소 연구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회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2. 연구회 및 지회 인준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각각 연구회 운영지침 및 심의규정, 지회 운영지침 및 심의규정에 의한다.

### 제 5 장 재 정

#### 제 19 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 광고수익,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의 회계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집행한다.

### 제 6 장 사 무

#### 제 20 조 (의사록 및 사무실)

1.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 직원을 둔다.

### 부 칙

#### 제 21 조

1. 본 회칙은 1997. 6. 19. 부터 발효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3. 2013. 1. 25 이후 개정된 회칙에 따라 초대 이사장은 개정 전 회장의 역할과 같으므로 이사장으로 직함을 변경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4. 2013년 정기총회에서 초대 회장을 선출한다.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회비 규정

제정 2014년 10월 18일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 6 조에 의하여 회비의 납부 및 연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비의 구분)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 및 종신회비로 한다.

### 제 3 조 (연회비)

- 정회원의 연회비는 일금 십만원, (일반)회원의 연회비는 일만원으로 한다.
-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사안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연회비를 면제하며, 회비 면제를 원하는 회원은 회비 면제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학회 사무국으로 본인이 직접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학회 고문위원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회비를 면제한다.
  - 1년 이상 해외 연수자 (근무처가 발행한 연수 확인서 첨부)
  - 질병 및 출산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요양중인 자 (진단서 첨부)
  - 미취업자 혹은 1년 이상 휴직중인 자 (확인서 첨부)
  - 군복무자 (군복무확인서 첨부)
  - 학회 고문위원
- 정회원의 경우, 연회비를 12회 납부하였을 경우 종신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하여 추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 제 4 조 (종신회비)

- 정회원의 종신회비는 일금 백만원으로 한다.
-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종신회비는 없다.
- 정회원은 연회비 혹은 종신회비 중 본인이 선택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종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 미납된 연회비가 있을 경우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없다.
- 연회비 납입 중간에 종신회비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 3 조 4 항의 12회 연회비 납입 기준으로 남은 잔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종신회비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예) 납입한 누적 연회비가 30만원인 회원이 종신회비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90만원 납부 시 종신회비로 전환 가능

### 제 5 조 (회비의 납부기간 및 방법)

- 해당 년도 연회비 납부기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예) 2014년 연회비 납부기한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전년도 연회비가 연체일 경우, 가장 오래된 미납 연회비부터 순차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예) 2012, 2013년도 연회비가 미납인 상태에서 2014년 중에 10만원을 납부하였을 경우, 2012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함.
- 초년도 회비는 회원 심사 및 인준이 된 날로부터 그 해 12월 31일 이내에 납부한다.
- 회비는 계좌이체하거나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 6조 (회비 납부자 혜택)

- 연회비 및 종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다음의 혜택을 취할 수 있다.

- ①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기 학술대회(동계통합학술대회, 워크숍) 등록비 면제 (춘계통합학술대회는 제외)
  - ② 학술연구비 공모 신청, 각종 연구사업 참여
  - ③ 정기 학술대회 초록 및 증례 발표 참여
  - ④ 정기 간행물 무료 신청
  - ⑤ 공지사항 및 뉴스레터 수취
  - ⑥ 기타 정회원 혜택
2.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다음의 혜택을 취할 수 있다.
- ①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기 학술대회(동계심포지엄통합학술대회, 워크숍) 중 연 1회에 한하여 등록비 1만원 할인 (춘계통합학술대회는 제외)
  - ② 정기 학술대회 초록 및 증례 발표 참여
  - ③ 정기 간행물 무료 신청
  - ④ 공지사항 및 뉴스레터 수취
  - ⑤ 기타 회원 혜택
3. 단, 제6조 1항 1호, 2항 1호의 정기학술대회 등록비 혜택은 전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및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며, 제3조 3항의 1호부터 4호까지의 회비 면제 회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예) 2013년도 회비를 납부하였을 시 2014년 동계, 추계 정기 학술대회 등록비 면제

#### **제 7조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 조치)**

본 회의 회원(정회원,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제 8조 (회비의 조정)**

연회비 및 종신회비 금액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에 없는 지침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규정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의 (일반)회원은 회칙 제 5 조(회원의 구성)의 '2. 회원'과 같다.